

중소기업협동조합 조세지원·부담금 개선방안 등 연구

KBIZ중소기업연구소 정책연구위원 전병욱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목 차

| | |
|-------------------------------------|----|
| 1. 서론 | 4 |
| 2.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의 분석 | 5 |
| 1) 조특법 및 지특법상 조세혜택의 분석 및 평가 | 5 |
| (1) 조특법상 조세혜택의 분석 및 평가 | 5 |
| (2) 지특법상 조세혜택의 분석 및 평가 | 13 |
| 2) 개별 법령상 준조세 부담의 분석 및 평가 | 17 |
| 3.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인정시 세제상 영향의 분석 | 22 |
| 4. 결론 | 27 |

요 약

본 연구는 개별 세법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다른 조합법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현행 과세체계의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영리법인 중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의 과세체계의 개편방식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개편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과세상 특례와 별개로 조합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반적인 법인세 세액계산구조에 비해 간소화한 방식과 함께 9% 및 12%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당기순이익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 등과 같은 지특법상의 조세혜택이 제공된다(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먼저, 법인세법상 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 및 당기순이익 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합들에 대한 조세혜택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4조 7,452억원인 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통해 제공받는 조세혜택은 2017년을 기준으로 4억2,420만원에 불과해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용하는 조세혜택은 다른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 조합법인 등과 함께 기타 조합들에 비해 매우 작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국세의 조세지출의 확대를 통해 다른 조합법인 등과의 상대적 차이를 축소시켜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

다음으로, 지방세와 관련해서도 다른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 조합법인 등과 함께 기타 조합들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지특법상 조세특례가 적용 가능한 반면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함께 그 규모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만이 적용가능해서 해서 국세와 함께 지방세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세혜택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지방세의 조세지출의 확대를 통해 다른 조합법인 등과의 상대적 차이를 축소시켜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세 부담과 별개로 개별 조합 및 연합회는 개별 법령에 의

해 상당한 준조세의 부담이 발생했는데, 이들 중 개별 조합 및 연합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준조세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도로점용료, 개발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이들 중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차별적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도로점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의 구체적 적용과정에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적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준조세 부담의 경감을 통해 다른 조합법인 등과의 상대적 차이를 축소시켜서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해 영리법인 중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의 세제상 영향과 관련해서는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일반적 현황을 고려하면 이들이 세법상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거법령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비영리성으로 인해 조특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구분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를 개정해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비영리법인 대신 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이와 함께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일반적인 법인세의 세액계산구조가 적용되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개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영리법인으로 구분할 경우 당기순이익 과세와 비교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추가적 조세혜택은 그 자체로 충분한 규모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이로 인한 비조세효과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1. 서론

현행 세법은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의 조합법인 등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상의 당기순이익 과세를 통해 충분한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조합법인 등과 함께 기타 조합들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특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지특법”)상의 조세혜택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고, 이에 반해 개별 법령에 의해 부과되는 준조세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제도의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하는 현행 법령체계에서 개별 세법의 개정을 통해 조세혜택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방법과 함께 근거법령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비영리법인성을 배제함으로써 당기순이익 과세의 배제에 따른 과세상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조특법상 영리법인 중 중소기업에게 적용되는 개별 조세특례의 적용을 통해 조세혜택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대안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별 세법의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의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의 과세체계의 개편방식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개편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장래의 입법적 논의 등과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현행 과세체계 개편 필요성의 분석

1) 조특법 및 지특법상 조세혜택의 분석 및 평가

(1) 조특법상 조세혜택의 분석 및 평가

법인세법은 납세의무자인 법인을 영리목적 유무에 따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 구분해서 영리법인은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¹⁾. 여기서 “비영리법인”이란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으로²⁾ 구분되는데, 비영리내국법인이란 <표 2-1>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³⁾.

<표 2-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

- ① 민법 제32조의4)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② 사립학교법 기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진 법인(단, 조합법인 등이 아닌 법인으로서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을 제외한다.)
- ③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여기서 “조합법인 등”이란 <표 2-2>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해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고⁵⁾, 이러한 조합법인 등은 <표 1>의 제2항의 단서에 의해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항상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
- 1)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으면 동일한 영리사업에 대하여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간의 과세형평이 침해되고, 비영리법인이 영리법인에 비해 경쟁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영리법인과 같이 법인세를 부과한다.
 - 2)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 등(법인세법 제2조 제4호)
 - 3) 법인세법 제2조 제2호
 - 4)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 5)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표 2-2> 법인세법상 “조합법인 등”의 범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과*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과 그 중앙회
 영업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영업초생산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과* 그 연합회 및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와 그 연합회
 영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영업조합

* 이하에서는 각각 “농협”, “수협” 및 “신협”

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
 는데, 구체적인 과세소득의 범위는 <표 2-3>과 같다⁶⁾.

<표 2-3> 비영리법인의 과세소득의 범위

- ① 사업소득⁷⁾ ② 이자소득 ③ 배당소득
- ④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 ⑤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
 산의⁸⁾ 처분수입은 제외한다.
- ⑥ 채권매매익⁹⁾(채권 등의¹⁰⁾ 매각익-매각손)
- ⑦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기타자산의 양도로 생기는
 수입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나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에 있어서 영리법인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과세
 상 특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¹¹⁾,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¹²⁾,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¹³⁾, 기장의무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

6)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7) 수입이 발생하는 사업을 말하지만 ① 축산업·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외의 농업 ② 연구개발업(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 ③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국제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는 교육시설에서 해당 법률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라 제공하는 교육서비스업 ④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사회복지사업 중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단체가 운영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사회복지사업 등 일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8) 해당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의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 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한 후 처분하는 경우에는 전입시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그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을 계산한다.

성실가산세 배제¹⁴⁾ 및 필수적 첨부서류 제출의무의 면제가¹⁵⁾ 적용된다.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과세상 특례와 별개로 <표 2-2>의 조합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및 제55조(세율)에도 불구하고 <표 2-4>와 같이 간소화한 방식으로 과세하도록 과세한다(“당기순이익 과세”). 다만,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않는다(조특법 제72조 제1항). 또한, 이처럼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조특법에 따른 대부분의 조세혜택을 적용하지 않는다(동조 제2항).

<표 2-4>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방식

| | |
|--|--|
| 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 |
| + 접대비·기부금 손금불산입액, 인건비 등 과다경비 손금불산입액, 업무무관비용·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퇴직급여충당금 손금불산입액 및 채무보증 구상채권·가지급금 관련 대손금·대손충당금 손금불산입액 | |
| = 과세표준×특례세율(9%, 20억원 초과분은 12%) | |
| = 당기순이익 과세 법인세액 | |

당기순이익 과세의 적용대상인 조합법인 등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표 2-2>의 개별 법인들 중에서 영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영업조합을 제외하고, 개별 조합의 연합회 및 중앙회를 제외하되, 개별 조합의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하고¹⁶⁾,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¹⁷⁾.

이상의 당기순이익 과세와 별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의 처분수입 과세범위>

| 구분 | | 과세소득 포함 여부 | 처분수입 계산 |
|--------------------------|----------|------------|---------------------------|
| 사업소득이 생기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 | 포함 | 과세대상 처분수입 = 양도가액-양도시 장부가액 |
|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고정자산 | 3년 미만 사용 | 포함 | 과세대상 처분수입 = 양도가액-취득시 취득가액 |
| | 3년 이상 사용 | 제외 | 과세제외 처분수입 = 양도가액-취득시 취득가액 |

- 9) 단,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예금보험제도 운영사업 또는 부실채권 인수·정리와 관련된 사업에 귀속되는 채권매매익은 제외한다.
- 10) ‘채권 등’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한다.
- 11) 법인세법 제29조
- 12) 법인세법 제62조
- 13) 법인세법 제62조의2
- 14) 법인세법 제75조의3 제1항
- 15) 법인세법 제60조 제5항 단서
- 16)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은 <표 2-2>의 “조합법인 등”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당기순이익 과세의 대상으로는 규정하였다(조특법 제72조 제1항 제6호).
- 17) 조특법 제72조 제1항 제5호

소기업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다)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2020.12.31.까지 경감하고(지특법 제60조 제1항)¹⁸⁾, 중소기업중앙회가 그 중앙회 및 회원 등에게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신축한 건축물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원시취득의 경우 2.8%)에도 불구하고 2%를 적용하여 2022.12.31.까지 과세한다(동조 제2항)¹⁹⁾(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상 조합법인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기순이익 과세와 별도로 개별 조합법인 등에 대해 적용되는 조특법상 조세지출의 내용을 정부의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조특법 제88조의5는 농업인·서민의 재산형성을 통한 실질소득 증대 및 저축의욕 고취를 위해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의 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의 출자금으로서 1명당 1,000만원 이하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과 그 조합원·회원 등이 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사업 이용 실적에 따른 배당소득(이하 “배당소득등”) 중 2020.12.31.까지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이후 받는 배당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5%(2021년에 받는 배당소득등) 및 9%(2022년 이후에 받는 배당소득등)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배당소득등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법 제89조의3은 동(同)조합원·회원 및 준조합원 중 가입 당시 20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1명당 3,000만원 이하의 예탁금(이하 “조합등예탁금”)에서 2007.1.1.부터 2020.12.31.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5%(2021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9%(2022년 이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자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다음으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111조 제1항 제2호는 전력용 면세유류를 통해 생활용수 부족이 심각한 도서지방에 깨끗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를 공급할 수 없거

18) 다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의 상인이 조합원으로서 설립한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조합원으로 설립하는 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취득세의 75%를 2020.12.31.까지 경감한다(동항 단서).

19) 다만,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등기일부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정한다(동항 단서).

나 상당한 기간 전기공급이 곤란한 도서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²⁰⁾ 증명하는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0.12.31.까지 수협중앙회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다음으로, 조특법 제116조 제1항은 영세한 농업인의 생산비·가계비 안정 및 실질적 소득보전을 위해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²¹⁾, 영업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신협 등”)의 각 조합원이²²⁾ 해당 조합²³⁾ 또는 그 중앙회로부터²⁴⁾ 용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1억원 이하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신협 등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의²⁵⁾ 예금·적금증서와 통장 및 농협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용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추가적으로, 조특법 제117조 제1항은 부실금융기관의 효율적인 정리지원 등을 위해 농협·수협·산림조합중앙회 등의 부실조합 양수 후 양도, 부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주권양도 및 농협금융지주회사가 한국산업은행에서 현물출자받은 주권을 자회사에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²⁶⁾.

이 밖에 당기순이익 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합(이하 “기타 조합”)을 대상으로 한 조특법상 조세지출의 내용으로는 먼저, 조특법 제66조는 영농조합 설립운영을 활성화함으로써 농업경쟁력 강화 및 농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말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전액과 기타 소득 중 (1,200만원×조합원수)를 한도로 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과 기타 배당소득 중 1,200만원을 한도로 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며, 동(同)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한 농지·초지

20) 같은 법 제98조에 따라 위임을 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21) 어촌계를 포함한다.

22) 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

23) 어촌계를 포함한다.

2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

25)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26) 이 밖에 부실금융기관등의 보유주식 양도, 예금보험공사 등의 주권양도,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주권양도, 신설법인 설립을 위한 현물출자로 인한 양도, 금융기관 주식과 금융지주회사 주주간 교환,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추종지수 반영을 위한 주권 양도,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가 재무구조개선기업에 직접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양도 및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간 주식 교환에 대해서도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를 감면하고, 농지·초지 외의 부동산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다음으로, 조특법 제67조는 협업적·기업적 어업경영의 활성화를 통한 어업경쟁력 제고, 어업인 소득증대 및 어업용 토지의 현물출자 유도를 통한 영어조합법인의 규모화 및 자본구조 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2021년말까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소득 중 (1,200만원×조합원수)를 한도로 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고, 조합원이 영어조합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1,200만원을 한도로 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하며, 동(同)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어업인이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어업용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세는 10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추가적으로,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3호는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농촌노동력 부족을 보완하고, 농어업법인의 부담 경감을 통해 경영수지를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과 동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²⁷⁾.

이상에서 분석한 법인세법상 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 및 당기순이익 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합들에 대한 조세특례에 대하여 최근 5년간(2016년-2020년)의 조세지원 실적을 비교하면 <표 2-5>와 같다.

27) 이상과 함께 정부의 “2020년 조세지출예산서”에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종 조합에 대해 직·간접적인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는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3조의2),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동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동법 제16조),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동법 제88조의4),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의 손금산입(동법 제104조의26) 및 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동법 제106조의2 제1항 제2호)가 있지만, 이들 조세특례는 본문에서 분석한 항목들과는 도입목적 및 정책취지의 측면에서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비교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표 2-5>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인 법인세법상 조합법인 등 및 기타 조합(당기순이익 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합)에 대한 연도별 조세특례 실적(2016년-2020년)

| (단위: 억원)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계 |
|------------------------------------|--------------------|-------|-------|--------|--------|--------|
| 당기순이익 과세 | 2,360 | 2,451 | 2,964 | 3,597 | 3,741 | 15,113 |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5,673 | 5,521 | 5,926 | 5,363 | 5,646 | 28,129 |
| 도서지방 자가발전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15 | 17 | 20 | 22 | 23 | 97 |
|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 62 | 26 | 77 | 91 | 95 | 351 |
|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33 | 235 | 471 | 616 | 641 | 1,996 |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305 | 284 | 332 | 342 | 354 | 1,617 |
|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 26 | 25 | 29 | 34 | 35 | 149 |
|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추정곤란* ^A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추정곤란 |
| 계 | 8,474 | 8,559 | 9,819 | 10,065 | 10,535 | 47,452 |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2016년-2018년은 실적, 2019년-2020년은 전망

*^A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없어 면제금액을 파악하기 곤란

<표 2-5>와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포함되는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 조합법인 등과 함께 기타 조합이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적용받는 4조7,452억원의 조세혜택²⁸⁾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적용받는 당기순이익 과세는 1조5,113억원으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2조8,129억원)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당기순이익 과세의 조세혜택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적용받는 조세혜택의 규모를 추정하기 위해 2017년을 기준으로 727개의²⁹⁾ 개별 조합 및 연합회를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보고서”(2018)에 의하면 전체 조사대상 중 49.0%가 당기순이익 과세를 활용했고, 57.0%가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이익 과세를 정리한 <표 2-4>에 의하면 일부 세무조정 항목들과 함께 이월결손금 공제 등을 제외하면 조합법인 등에 대해 과세표준은 일반적인 법인세 세액계산구조에 의한 과세표준과 유사하게 계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동일 과세표준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의 세율구조(20억

28) 단,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에는 이들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 조합법인 등 및 기타 법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실금융기관등의 보유주식 양도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의 면제가 포함되어 있고,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면제는 추정 곤란으로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조세혜택의 규모와는 다를 수 있다.

29) 882개의 전체 개별 조합 및 연합회 중 휴면조합 및 소재지 불명을 제외한 조사대상의 개수이고, 동(同)조사대상은 20개의 연합회, 180개의 전국조합, 254개의 지방조합 및 273개의 사업조합으로 구성된다.

원을 기준으로 9% 및 12%)가 일반적인 법인세의 세율구조(2017년의 경우에는 2억원, 200억원을 기준으로 각각 10%, 20% 및 22%)에 비해 유리하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한 49.0%의 개별 조합 및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단, 법인세를 납부하면서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8.0%(57.0%-49.0%)의 개별 조합 및 연합회는 이월결손금 공제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적용으로 인해 일반적인 법인세 세액계산구조를 따르더라도 과세표준을 축소해서 결정세액을 상대적으로 더욱 줄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017년의 실적에 대한 개별 조합 및 연합회의 2018년의 법인세 평균 납부액이 643.9만원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추정된 이들 조합 및 연합회가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할 경우의 과세표준이 1억1,949만원으로³⁰⁾ 일반적인 법인세의 세율구조의 기준금액인 2억원에 비해 충분히 작기 때문에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는 개별 조합 및 연합회가 일반적인 법인세의 세율구조를 적용하면 대부분 9% 대신 10%의 세율을 적용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세의 세액계산구조를 따를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 공제 등을 별도로 고려하지 않더라도 당기순이익 과세에 의해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게 제공되는 조세혜택은 2017년에는 4억2,420만원에³¹⁾ 불과하고,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해서 일반적인 법인세의 세액계산구조를 적용할 경우 2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조세혜택은 46억원에³²⁾ 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용하는 조세혜택은 최대 규모로 가정하더라도 다른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 조합법인 등과 함께 기타 조합들에 비해 0.5%의³³⁾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매우 작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국세의 조세지출의 확대를 통해 다른 조합법인 등과의 상대적 차이를 축소시

30) $643.9\text{만원} \div 59.8\% = 1,075.4\text{만원}$ 이고, $1,075.4\text{만원} \div 9\% = 1\text{억}1,949\text{만원}$ 이다. 여기서 59.8%는 2018년의 법인세 납부 여부에 대하여 무응답(4.8%)을 제외하고, 납부(57.0%) 및 미납부(38.2%)만으로 계산한 납부비율이다($57.0\% \div (57.0\% + 38.2\%) = 59.8\%$). 즉, 법인세를 납부한 개별 조합 및 연합회만을 대상으로 계산하면 법인세 납부액은 평균 1,075.4만원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31) $355\text{개} \times 1\text{억}1,949\text{만원} \times (10\% - 9\%) = 4\text{억}2,420\text{만원}$ 이다. 여기서 355개는 725개의 응답 사례수에 49.0%의 당기순이익 과세 적용비율을 곱해서 계산한 개별 조합 및 연합회의 개수이다($725\text{개} \times 49.0\% = 355\text{개}$).

32) $355\text{개} \times 1\text{억}1,949\text{만원} \times (20\% - 9\%) = 46\text{억원}$ 이다. 단, 20%의 한계세율을 적용하더라도 평균세율은 누진공제로 인해 이보다 작고, 1억1,949만원의 평균 과세표준을 고려하면 20%의 한계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개별 조합 및 연합회의 비율은 절반 이하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46억원의 계산결과도 실제 조세혜택 규모에 비해서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20% 대신 200억원 이상의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의 최고세율인 22%를 적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가정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계산결과에는 반영하지 않았다.

33) $46\text{억원} \div (8,559\text{억원} - 46\text{억원}) = 0.5\%$

켜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지특법상 조세혜택의 분석 및 평가

국세의 당기순이익 과세와 별도로 연합회 및 중앙회를 포함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이하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전술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제60조)에 의해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및 특례세율 적용을 통해 지방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지만, 이러한 지방세 부담의 경감과 관련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의 부족으로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단,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보고서”(2018)에 의하면 2017년까지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및 특례세율을 적용받은 응답 사례수가 5.9%에 불과해서 이러한 지방세 부담의 경감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공받은 조세혜택의 규모도 비교적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다른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 조합 등과 함께 기타 조합들이 지특법을 통해 적용받는 지방세의 감면규정을 아래와 같이 비교해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공받는 조세혜택의 상대적 규모에 대해 판단하도록 한다.

먼저, 지특법 제10조 제1항은 법인세법상 조합법인 등의 일부에 해당하는 <표 2-6>의 조합 및 중앙회 등이 농어업인에게³⁴⁾ 용자할 때에 제공받는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³⁵⁾ 대해서는 등록면허세의 50%을 2020.12.31.까지 경감한다고³⁶⁾ 규정했고, 동조 제2항은 농어업인이 영농, 영림, 가축사육, 양식, 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을 2021.12월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농어업인 등에 대한 용자관련 감면 등”).

<표 2-6> 용자시 제공받은 담보물에 관한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경감 대상 조합 및 중앙회(지특법 제10조 제1항)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및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다음으로, 지특법 제11조 제1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

34)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포함한다.

35) 20톤 미만 소형어선에 대한 담보물 등록을 포함한다.

36) 다만, 중앙회, 농협은행 및 수협은행에 대해서는 영농자금·영어자금·영림자금 또는 축산자금을 용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를 제16조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농업법인”)이³⁷⁾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³⁸⁾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³⁹⁾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⁴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2020.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했고, 동조 제2항은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20.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했으며⁴¹⁾, 동조 제4항은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20.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다음으로, 지특법 제12조 제1항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이하 “어업법인”)이 영어·유통·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50%를 각각 2020.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했고⁴²⁾, 동조 제2항은 어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해서는 2020.12.31.까지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37)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이하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농업법인(설립등기일부터 90일 이내에 농업경영정보 등록을 한 농업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8) 농지, 임야 및 농업용 시설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외의 지역인 것을 말한다.

3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대표자가 1. 법인 설립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2.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

40) 지특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② 자경농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농업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해당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3. (생략)

41) 동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였다.

42) 동조 제3항은 제1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였다.

다음으로, 지특법 제14조 제1항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가 구매·판매 사업 등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1. 구매·판매·보관·가공·무역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2. 생산 및 검사 사업용 토지와 건축물 및 3. 농어민 교육시설용 토지와 건축물에⁴³⁾ 대해서는 취득세의 25%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25%를 각각 2020.12.31.까지 경감한다고 규정했고, 동조 제3항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 및 연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⁴⁴⁾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⁴⁵⁾(이하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다음으로, 지특법 제57조의2 제2항은 1.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간의 합병, 2.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간의 합병 및 3.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간의 합병의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합병으로⁴⁶⁾ 양수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면제하고, 합병으로 양수받아 3년 이내에登記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2021.12.31.까지 등록면허세의 50%를 경감한다고 규정하였다⁴⁷⁾(이하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다음으로, 지특법 제57조의3 제1항은 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및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동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⁴⁸⁾ 또는 동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3.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동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43) 제1호 내지 제3호의 부동산에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 따른 유통자회사에 농수산물 유통시설로 사용하게 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

44)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45) 동조 제5항은 제3항에서 정하는 각 조합들의 중앙회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다.

46)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적격합병

47) 다만, 합병등기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합병시 손금산입에 대한 사후관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48)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에 관한 명령으로 한정한다.

터 양수한 재산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이 동법 제4조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또는 동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전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이 동법 제86조의4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조합으로부터 양수한 재산 및 6.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가 동법 제80조의2에 따른 계약이전의 결정을 받은 부실금고로부터 양수한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다음으로, 지특법 제87조 제1항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중앙회는 제외한다)이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했고, 지특법 제87조 제2항은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새마을금고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 2020.12.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추가적으로, 지특법 제167조는 조특법 제72조 제1항(당기순이익 과세)을 적용받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0.12.31.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지방세법 제103조의20에서 규정하는 법인지방소득세의 표준세율에도⁴⁹⁾ 불구하고 조특법 제7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법인세 세율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로 한다고 규정하였다(이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이상에서 정리한 내용에 의하면 다른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 조합법인 등과 함께 기타 조합들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지특법상 조세특례가 적용 가능한 반면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지특법 제60조)와 함께 그 규모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동법 제167조)만이 적용 가능해서 해서 국세와 함께 지방세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지방세의 조세지출의 확대를 통해 다른 조합법인 등과의 상대적 차이를 축소시켜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49) 2억원, 200억원 및 3,000억원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각각 1%, 2%, 2.2% 및 2.5%(즉, 일반적인 법인세 세율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세율)

2) 개별 법령상 준조세 부담의 분석 및 평가

앞서 분석한 법인세 부담과 별개로 개별 조합 및 연합회는 개별 법령에 의해 상당한 준조세의 부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보고서”(2018)에 의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응답 사례수의 15.9%가 준조세를 부담했고, 부담한 경우의 평균 부과금액은 751만4,000원인데, 이를 바탕으로 개별 조합 및 연합회의 평균적 준조세 부담액이 119.5만원으로⁵⁰⁾ 법인세 납부액(643.9만원)의 18.6%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同)보고서에는 개별 부담금별로 부담한 경우의 평균 부과금액을 제시하고 있는데, 해당 내용에 의하면 개별 조합 및 연합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준조세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8,442.1만원), 도로점용료(3,621.0만원), 개발부담금(2,345.6만원) 및 교통유발부담금(564.7만원)으로 나타났다⁵¹⁾.

준조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이용가능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개별 조합 및 연합회의 상대적 부담 수준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들 항목들과 관련해서 다른 당기 순이익 과세대상 조합 등과 함께 기타 조합들에 대해서도 개별 근거법령에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수준의 준조세를 부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 하수도법 제61조 제1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⁵²⁾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⁵³⁾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고, 동조 제2항은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로⁵⁴⁾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

50) 751.4만원×15.9%=119.5만원

51) 동(同)보고서에서는 개별 준조세별로 부담비율의 자료는 제시하지 않아서 부담비율까지 고려한 평균적 준조세 부담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이들과 구성이 달라질 수 있다. 동(同)보고서에서 부담할 경우의 평균 부과금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준조세로 제시한 것은 자동차환경개선부담금(39.6만원), 환경개선부담금(147.7만원), 자발적협력미이행부담금(152.1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191.7만원) 및 지역자원시설세(202.3만원)이다. 단, 지역자원시설세는 별도의 지방세 세목이기 때문에 잘못된 응답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52) 하루에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되는 경우를 말한다(동법시행령 제35조 제1항).

53) 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

54) 1. 타공사(공공하수도를 이설·보수·개수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한 공공하수도 외의 상수도관, 가스관, 통신관, 전주 및 도로·철도 등의 설치공사 및 2.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서 가. 도시개발사업(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택지개발촉진법 및 도시개발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나. 산업단지조성사업

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했으며, 동조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⁵⁵⁾. 이상과 같이 하수도원인자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해 차별적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도로점용료의 징수 등과 관련해서 도로법 제66조 제1항은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로부터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⁵⁶⁾. 단, 점용료 징수의 제한과 관련해서 동법 제68조는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및 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등에⁵⁷⁾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들 각 호의 구체적 적용과 관련해서 동법시행령 제73조 제1항은 법 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등)의 수행 다. 공항건설사업의 수행 라. 관광지·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및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개발사업 등)의 수행 마. 그 밖에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지역의 개발행위자가 하수처리구역으로 포함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이 필요한 행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 55) 동조 제4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원인자부담금은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 56) 동조 제2항은 도로관리청은 1. 도로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2. 동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및 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점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동조 제4항은 점용료의 산정기준,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반환 방법 등 점용료의 징수 및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동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였다. 동조 제5항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동법 제61조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일반경쟁에 부친 때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시한 금액을 점용료로 부과하되, 그 점용료는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의 3배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 57) 그 밖의 동조의 각 호는 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4.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4의2. 주택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 또는 출입구와의 높이 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8.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도로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점용허가받은 경우 및 9.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68조 제1호에 따른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으로 한다고 규정했는데, 다시 동법시행규칙 제35조의 각 호에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중의 하나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을 규정하였다⁵⁸⁾. 여기서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 조합 등 및 기타 조합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농협, 수협,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비해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법시행령 제73조 제3항 제2호는 “법 제68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한다고 규정했는데, 다시 동법시행규칙 제36조의 각 호에서는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 미만일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농어촌도로는 재해 등의 경우에 도로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는데, 이러한 감면규정에 대해서는 역시 농협, 수협,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비해 요건에 부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도로점용료와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해 차별적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대상인 농협, 수협,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에 감면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최종적인 부과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개발부담금과 관련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⁵⁹⁾, 산업단지개발사업, 관광단지조성사업⁶⁰⁾, 도시재개발사업·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용지조성사업,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⁶¹⁾ 및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⁶²⁾. 이와 함께 동법 제1조에서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목적을 “각종 개발사업 기타 사회·경제적

58) 그 밖의 동조의 각 호는 1.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사립학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학교법인 및 6.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9)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60) 온천개발사업을 포함한다.

61) 골프장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62) 개발부담금의 구체적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요인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이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사유화됨으로써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가 성행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한 것을 고려하면 개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해 차별적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제1항은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을 포함한 다(63)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동조 제2항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도농복합형태의 시는 읍·면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가 10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에(64) 있는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6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했고,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이란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1,000m² 이상인 시설물을 말하되,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 주택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에 위치한 시설물로서 도로변에(66) 위치하지 아니한 시설물인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이 3,000m²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제3항은 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당시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부과대상 시설물”)의 소유자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또한, 동조 제6항은 시장에 따라 그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소유지분의 면적의 기준을 50%의 범위에서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했고, 동조 제7항은 시장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의 산정방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25%(개별입지사업) 또는 20%(계획입지사업)
= (부과종료시점의 지가- 부과개시시점의 지가-개발비용-정상지가상승분)
×부담률(25% 또는 20%)

63) 동법 제5조 제1항

64) 동법 제3조 제1항 제1호

65) 동조 제8항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면적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동조 제8항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및 3. 그 밖에 교통유발량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음 이들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였다.

66) 주택법 제2조 제13호 가목에 따른 주택단지의 도로는 제외한다.

하고 시설물의 위치·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부과대상 시설물의 규모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50%의 범위에서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교통유발부담금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해 차별적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비교대상인 농협, 수협,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 등에 비해 인구 10만명 이상의 도시에서 부과대상 시설물을 소유할 가능성이 큰 측면을 고려하면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최종적인 부과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면 개별 조합 및 연합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준조세들 중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차별적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도로점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의 구체적 적용과정에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적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준조세 부담의 경감을 통해 다른 조합법인 등과의 상대적 차이를 축소시켜서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3.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소기업 인정시 세제상 영향의 분석

이번 장에서는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해 영리법인 중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의 세제상 영향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먼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표 3-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고 규정했고, 동조 제4항은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여기서 <표 3-1>의 제2호 내지 제4호의 구체적 범위와 관련해서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평균 매출액등이 동법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한 업종별 규모 기준(400억원-1,500억원) 이하이고, 자산총액 5,000억원 미만이며,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위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세부적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으로 규정하였다⁶⁷⁾.

<표 3-1>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각 호)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2.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
3.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단, 동법 제2조 제4항은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상의 중소기업기본법 규정을 바탕으로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 구분과 관련해서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은 <표 3-2>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조세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표 3-2>의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표 3-1>의 중

67) 동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

소기업기본법상 범위와 비교하면 사회적기업 등의 개별적 적용대상이 포함되지 않고, 자산총액 기준이 제외된 반면 소비성서비스업의 업종 기준은 추가된 것인데, 이들은 내용상 매우 유사하지만, 법령 체계상 세법상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과는 기본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2>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 각 호)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⁶⁸⁾
4. 제29조 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일반적 현황을 고려하면 대부분 <표 3-2>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1호는 “중소기업자”를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동조 제3항에⁶⁹⁾ 따른 중소기업을 포함한다)을 영위하는 자 및 나.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⁷⁰⁾ 규정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 제2호는 “중소기업관련단체”란 구성원의 과반수가 중소기업자로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했는데, 이와 같이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비영리성으로 인해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표 3-2>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구분될 수는 없는 것이다.

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취급으로 인해 법인세법상 “조합법인 등”의 범위에 포함되어서 비교적 낮은 세율의 당기순이익 과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비영리법인에 대한 과세상 특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특례, 기장의무와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배제 및 필수적 첨부서류 제출의무의 면제 등을 적용해서 법인세의 세금부담 자체와 함께 납세협력비용을 상당히 경감할 수 있다.

이와 구분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를 개정해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비영리법인 대신 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이와 함께 세법상

68)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69)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0)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 제1항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종류를 1. 협동조합(이하 “조합”) 2.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 3.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및 4.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로 규정하였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일반적인 법인세의 세액계산구조가 적용되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개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컨대, 조세지출예산서에 “중소기업” 항목으로 기재된 개별 조세지출로 한정하더라도 2020년의 조세혜택의 실적이 전체 중소기업에 대하여 <표 9>와 같이 2조5,159억원으로 전망될 정도로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3> 조세지출예산서상 “중소기업” 항목으로 기재된 개별 조세지출의 연도별 실적(2016년-2020년)

| (단위: 억원) | 2016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계 |
|--------------------------------|--------|--------|--------|--------|--------|---------|
| 중소기업 등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5조) | 483 | 583 | 647 | 922 | 888 | 3,523 |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동법 제6조) | 1,844 | 1,493 | 3,009 | 2,643 | 2,762 | 11,751 |
| 중소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동법 제7조) | 18,643 | 20,603 | 22,214 | 20,357 | 21,311 | 103,128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동법 제7조의4) | 0 | 3 | 3 | 8 | 8 | 22 |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시 세액공제(동법 제8조의3) | 83 | 94 | 149 | 182 | 190 | 698 |
| 계 | 21,053 | 22,776 | 26,022 | 24,112 | 25,159 | 119,122 |

* 자료: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

* 2016년-2018년은 실적, 2019년-2020년은 전망

전술한 바와 같이 2017년을 기준으로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면서 법인세를 납부한 49.0%의 개별 조합 및 연합회와 구분해서 8.0%의 개별 조합 및 연합회는 이월결손금 공제 및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의 적용으로 인해 일반적인 법인세 세액계산구조를 따르더라도 과세표준을 축소해서 결정세액을 상대적으로 더욱 줄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는 개별 조합 및 연합회가 일반적인 법인세의 세율구조를 적용하면 대부분 9% 대신 10%의 세율을 적용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8.0%의 개별 조합 및 연합회는 이월결손금 공제 등을 통해 과세표준을 10% 이상 축소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비영리법인을 전제로 한 이상의 세금부담 경감과 별개로 영리법인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조특법상의 각종 세액공제·감면의 합계가 2017년의 경우 산출세액의 20.0%⁷¹⁾ 수준이고, 당기순이익 과세 대신 적용하는 이월결손금 공제 등은 세금부담의 순수한 경감이 아니라 과세이월로 인한

71) 2조6,018억원(조특법상 세액공제·감면의 합계)÷13조218억원=(1조988억원(조특법상 세액감면의 합계액)+1조2,114억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917억원(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제외한 조특법상 세액공제의 합계액))÷13조218억원=20.0%

기간이자의 효과에 그치는 점을 고려하면 비영리법인의 취급 대신 근거법령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비영리성을 배제할 경우에는 세금부담의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⁷²⁾.

단, 앞선 장의 분석결과에 추가해서 이월결손금 공제 등을 통한 세금부담의 감소가 당기순이익 과세와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이상과 같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영리법인으로 구분할 경우 당기순이익 과세와 비교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추가적 조세혜택은 4억2,337만원(지특법상의 세액공제·감면에 의한 조세혜택까지 고려하더라도 최대 4억6,571만원⁷³⁾)으로⁷⁴⁾ 계산되어서 그 자체로 충분한 규모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이로 인한 비조세효과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⁷⁵⁾.

72) 세법상 중소기업의 구분으로 인해 조특법상의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적용하는 것과 함께 지특법 및 다른 세법에서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조특법을 제외한 나머지 세법에 의한 상대적 차이는 조특법상의 조세혜택의 규모에 비해서는 매우 작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고려하지 않았다. 단, 이와 관련해서 조특법 등의 개별 세법에서 중소기업을 일반기업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주요 항목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산업통상자원부의 “2019년 성장걸림돌 과제선정 검토 자료”에서 인용하였다).

<조특법 등의 개별 세법에서 중소기업을 일반기업에 비해 유리하게 취급하는 주요 항목>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제1호),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 제2호),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26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 근로소득중대기업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의4,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차 물류비용 세액공제시 중소기업 우대(조특법 제104조의14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의14), 최대주주 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차등(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범위 차등(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연결납세법인 과세표준 계산시 이월결손금 범위 차등(법인세법 제76조의13, 동법시행령 제120조의14 및 제120조의17),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지특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연구·인력개발비 지방세액공제(지특법 제102조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연구·인력개발 설비투자 지방세액공제(지특법 제103조 및 동법시행령 제57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지방세액공제(지특법 제111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 환경보전시설 투자 지방세액공제(지특법 제112조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투자 지방세액공제(지특법 제137조 및 동법시행령 제90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지방세액공제(지특법 제109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지방세액공제(지특법 제11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지방세액공제(지특법 제113조의3), 청년고용중대기업 지방세액공제(지특법 제115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67조),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지방세 지원(지특법 제115조의5), 중소·중견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관세법 제95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조특법 제7조, 동법시행령 제2조 및 제6조),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 중소기업 고용증가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조특법 제30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4), 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조특법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사업전환 중소기업과 무역조정 지원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제3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중소기업 공장이전 과세특례(조특법 제85조의8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의9),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배제(조특법 제101조), 상속·증여세 물납 한도 차등(상증법 제71조 및 동법시행령 제70조 제2항),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법인세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0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방세액공제(지특법 제118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중소기업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이월과세(지특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72조), 사업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액감면(지특법 제122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액감면(지특법 제1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중소기업 신규 채용에 따른 지방세액공제(지방세법 제84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3), 경단녀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세액공제(지특법 제115조의2),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에 따른 지방세액공제(지특법 제117조), 기술이전 및 기술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6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6), 가업상속공제의 대상 제한(상증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부과(상증법 제45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 중소기업 환경오염방지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관세법 제9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6조),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조특법 제100조의32), 중소기업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조특법 제7조의4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4),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8조의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지특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4조), 수출 중소기업의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유예(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91조의2)

- 73) $4\text{억}2,337\text{만원} \times (1+10\%) = 4\text{억}6,571\text{만원}$ (단, 지특법상은 조특법상의 세액공제·감면을 선별적으로 채택해서 적용하기 때문에 지특법까지 포함한 실제 조세혜택의 규모는 이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74) $4\text{억}2,420\text{억원} \times \{(9\%-8.0\%) \div (10\%-9\%)\} = 4\text{억}2,337\text{만원}$
- 75) 전술한 바와 같이 10% 예외적으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영리법인의 구분을 통해 당기순이익 과세에 비해 오히려 조세혜택이 감소하게 된다. 즉, 당기순이익 과세를 통한 조세혜택이 11%(20%-9%)의 실효세율 차이인 반면 영리법인의 구분을 통한 조세혜택은 4.0%(20%×20.0%)의 실효세율 차이인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개별 세법의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다른 조합법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현행 과세체계의 개편과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영리법인 중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의 과세체계의 개편방식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세금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제도개편방안에 대해 분석하였다.

법인세법은 영리법인과 구분해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하는데,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 법인세법상 조합법인 등은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인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항상 비영리법인으로 본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이나 신고·납부·결정·경정·징수에 있어서 영리법인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지만, 과세상 특례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등이 적용된다. 이와 같은 비영리법인의 일반적인 과세상 특례와 별개로 조합법인 등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일반적인 법인세 세액계산구조에 비해 간소화한 방식과 함께 9% 및 12%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당기순이익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당기순이익 과세와 별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품의 생산·가공·수주·판매·보관·운송을 위하여 취득하는 공동시설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는 것 등과 같은 조특법상의 조세혜택이 제공된다(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법인세법상 조합법인 등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당기순이익 과세와 별도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제외한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 개별 조합법인 등에 대해 적용되는 조특법상 조세지출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농·어민 지원을 위한 인지세 면제 및 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가 있다.

이 밖에 당기순이익 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합(기타 조합)을 대상으로 한 조특법상 조세지출은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및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있다.

이와 같은 법인세법상 조합법인 등에 대한 조세특례 및 당기순이익 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닌 조합들에 대한 조세혜택은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4조7,452억원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적용받는 당기순이익 과세는 1조5,113억원으로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과세의 조세혜택 중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적용

받는 조세혜택의 규모를 추정하면 2017년을 기준으로 4억2,420만원에 불과하고, 매우 예외적인 상황을 가정하더라도 46억원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적용하는 조세혜택은 다른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 조합법인 등과 함께 기타 조합들에 비해 매우 작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국세의 조세지출의 확대를 통해 다른 조합법인 등과의 상대적 차이를 축소시켜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세의 당기순이익 과세와 별도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의해 제공받는 지방세 부담의 경감과 관련해서는 이용가능한 자료의 부족으로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 2017년까지 부동산 취득세의 경감 및 특례세율을 적용받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비율이 매우 낮아서 이러한 지방세 부담의 경감을 통해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제공받은 조세혜택의 규모도 비교적 작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른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 조합 등과 기타 조합들은 지특법의 지방세 감면규정을 통해 농어업인 등에 대한 융자관련 감면 등, 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어업법인에 대한 감면, 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기업 재무구조 개선 등에 대한 감면 및 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즉, 다른 당기순이익 과세 대상 조합법인 등과 함께 기타 조합들에 대해서는 매우 다양한 지특법상 조세특례가 적용가능한 반면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와 함께 그 규모가 매우 작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 특례만이 적용가능해서 해서 국세와 함께 지방세의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세혜택의 규모가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지방세의 조세지출의 확대를 통해 다른 조합법인 등과의 상대적 차이를 축소시켜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법인세 부담과 별개로 개별 조합 및 연합회는 개별 법령에 의해 상당한 준조세의 부담이 발생했고, 평균적 준조세 부담액이 법인세 납부액의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개별 조합 및 연합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과중한 준조세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도로점용료, 개발부담금 및 교통유발부담금으로 나타났다

준조세의 경우에도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이용가능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

해 개별 조합 및 연합회의 상대적 부담 수준을 직접적으로 추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단, 이들 항목들과 관련해서 다른 당기순이익 과세대상 조합 등과 함께 기타 조합들에 대해서도 개별 근거법령에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유사한 수준의 준조세를 부과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이들 중에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에 대해서는 차별적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반면 도로점용료 및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는 근거법령의 구체적 적용과정에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암묵적인 차별적 부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한 준조세 부담의 경감을 통해 다른 조합법인 등과의 상대적 차이를 축소시켜서 부담금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별 조합 및 연합회에 대해 영리법인 중 중소기업의 지위를 인정할 경우의 세제상 영향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먼저 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 범위와 비교하면 이들은 내용상 매우 유사하지만, 법령 체계상 세법상 중소기업의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과는 기본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일반적 현황을 고려하면 이들이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근거법령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 규정한 비영리성으로 인해 조특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세법상 중소기업으로 구분될 수는 없다.

이와 관련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를 개정해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해 비영리법인 대신 영리법인으로 구분하고, 이와 함께 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의 일반적인 법인세의 세액계산구조가 적용되는 대신 중소기업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개별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전술한 분석결과에 추가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개정을 통해 영리법인으로 구분할 경우 당기순이익 과세와 비교한 전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추가적 조세혜택은 4억2,337만원(지특법상의 조세혜택까지 고려하더라도 최대 4억6,571만원)으로 계산되어서 그 자체로 충분한 규모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영리법인의 구분과 관련해서는 이로 인한 비조세효과까지 충분히 고려해서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국세청. 각연도. 국세통계연보.
대한민국 정부. 각연도. 조세지출예산서.
산업통상자원부. 2019. 2019년 성장걸림돌 과제선정 검토 자료.
중소기업중앙회. 2018.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종합실태조사 보고서.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삼일인포마인. www.samili.com.